

(앞 쪽)

시설물 미사용 신고서					처리기간
					즉 시
신고인	① 성 명			② 생년월일	
	③ 주 소				
부과대상 시설물	④ 시설명		⑤ 용 도		⑥ 연면적 ㎡
	⑦ 소재지	(전화:)			
미 사 용 내 용					
⑧ 미사용 면적(㎡)	⑨ 용 도	⑩ 기 간	⑪ 사 유		
()					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관 할 시 장 귀하					
첨부서류: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1부					수수료 없 음

210mm×297mm[신문용지 54g/m²(재활용품)]

※ 기재 방법

(뒤 쪽)

①: 신고 당시 시설물의 소유자를 적습니다.

⑦: 미사용 시설물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

⑧: 해당 시설물의 전체 면적 대비 미사용 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는
부대시설 또는 공유시설 면적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은 ()에 적습니다.

⑪: 6하 원칙에 따라 적습니다.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